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시보

【제 1082 호】

2014년 06월 13일 (금)

회 람							

차 례

규 칙

고양시 규칙 제898호 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1

고양시 규칙 제899호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일부개정규칙 18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4-163호 도시관리계획(학교 : 중학교)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5

고양시 고시 제2014-166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6

고양시 고시 제2014-167호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 고양삼송수질복원센터)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7

고양시 고시 제2014-169호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9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14-886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50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14-256호 공인 폐기 공고 51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

2014년 6월 13일

고양시 규칙 제898호

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양시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공개·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정의 중요한 현안사항
2. 다수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3.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50억원 이상의 사업 또는 공사
4. 2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
5.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 용역사업
6.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국 주무과장 중에서 선정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위원의 3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정책실명제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기록 및 보존)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성명 및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제8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매년 대상사업을 결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 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사업 현황에 등록 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정책실명의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정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및 단체를 포함한다.

제10조(실태점검 및 활성화)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그 실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정책기획담당관
입안자	과 장 성 명	정책기획담당관 박 동 길
	팀 장 성 명	정책평가팀장 김 승 균
	담 당 자 성명·전화	손 진 아 (031-8075-2162)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2. (생략)	1.~2.(현행과 같음)
3.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100억원 이상의 사업 또는 공사	3. .....50억원 ....
4. 5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	4. 20억원 .....
5.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	5. .....주요 연구 용역사업
6.~7. (생략)	6.~7.(현행과 같음)
②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③ (삭제)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③ 정책실명제의 대상자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간,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신 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국 주무과장 중에서 선정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위원의 3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정책실명제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7조(기록 및 보존)**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성명 및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제4조(정책실명제의 등록)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반기 종료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자체심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책실명제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책실명제 대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이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물에 표식을 각인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8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매년 대상사업을 결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사업 현황에 등록 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자료집의 발간)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을 기준으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로 정책자료집을 매년 발간하되, 정책 또는 사업별로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정책추진 배경 2. 추진경과 및 비망록 3. 계획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 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발간하여 고양시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각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은 1년 단위로 나누어 작성하되, 최종 연도에는 모든 기간의 자료를 합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면 또는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자료집에서 제외하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책추진 과정 비망록” 의 “기타” 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고양시 기록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정책실명의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정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및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지도·점검)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업무추진 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점검 및 활성화)**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그 실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②담당자 (연락처)	
③정책사업명			
④선정기준		⑤사업기간	
⑥주요내용			

<기재항목>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③ 정책 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등록번호	20○○-○○	담당부서 작성자	(국·소·센터 / 부서명) (이름/사무실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의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20○○.○.○○ ~ 20○○.○.○○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추진경과(추진경과 및 내용을 추진한 날짜 순서대로 기록) ○ □ 사업관련자 현황 ○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 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①등록번호	②정책명	③사업부서	④담당자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2014-1, 2014-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

①등록번호	②정책명	③사업부서	④담당자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2014-1, 2014-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

□ 개정 이유

○ 안전행정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 고양시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 내용

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제3조)

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관 지정 및 임무부여 신설**(제4조)

다.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신설**(제5조)

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등록 및 공표 절차 규정** (제8조)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

2014년 6월 13일

고양시 규칙 제899호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2조”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로 한다.

제3조 중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4조”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9조”로 한다.

제4조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고양시여성발전위원회”를 “고양시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제목의 “사정변경등에 의한”을 “서전변경 등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항 제6호의 “규칙에 의한”을 “규칙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고양시여성발전위원회”를 “고양시성평등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여성가족과
입안자	과 장 직위 · 성명	여성가족과장 지방간호사무관 안선희
	팀 장 직위 · 성명	여성정책팀장 지방행정주사 이영심
	담 당 자 성명 · 전화	담 당 자 이경아 8075-3335

[별지 제1호서식]

여성발전기금 지원신청서

기관(단체)명		대표(사업)자 성 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명					
사업의 목적					
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 재 원

총 사 업 비	기 금 보 조 액	자 체 부 담 액	후 원 금	그 밖의 재원
사 업 기 간				
사업계획서	따 로 붙 임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기관(단체)명 : (인)
대표(사업)자 :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정관(단체에 한함)
3.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단체에 한함)
4.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

1. 사업계획

가. 사업명

나. 목 적

다. 내 용

라. 소요예산 및 지원 신청액

(단위 : 천원)

내 역	소요금액	산 출 근 거	지원신청액

마.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여성발전기금		
시 지 원 금		
동사업수익금		
자체운영자금		
회 원 모 금		
독지가후원금		
그 박의 재원		

바. 정부보조금(국·도비, 시비·여성발전기금)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지원금액	보조금구분	비 고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가. 단체의 구성현황

임 원 수				회 원 (단 원) 수			
회 장	부회장	이 사	그 밖의 임원	계	정회원	준회원	그 밖의 회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나. 활동실적

기 간	활 동 내 용	비 고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등록(허가·신고) 일 자	등록(허가·신고) 내 용	등록(허가·신고) 번 호	등 록 기 관 명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교부 청구서

1. 사 업 자 :						
2. 사업장소 : (전화 :)						
3. 사업기간 :						
4. 청구금액 :						
5. 청구내역 :						
총사업비	소 요 경 비 재 원					산 출 근 거
	기금신청액	시지원금	자체부담금	후원금	그 밖의 재원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번호 : (은행)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2. 기금집행상황

내 역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계				
여성 발전 기금				
시 지 원 금				
자 체 부 담 금				
그 밖의 재원				

붙 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사본, 세금계산서 각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단체)명 : (인)
대표(사업)자 : (인)
전 화 번 호 :

고양시장 귀하

1.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2.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집 행 내 역	집 행 액				
	계	여성발전기금	시지원금	자체부담금	그 밖의 재원
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2조에 따라 고양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제3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4조에 따라 사업과 활동으로써 관련 행정기관의 장 및 여성복지 관련단체의 장과 그 밖의 민간인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
제4조(기금지원신청)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4조(기금지원신청)**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지원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양시여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 5. (생략)	**제5조(기금지원결정)** ....고양시성평등위원회.....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교부) ① 기금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청구서와 관련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기금의 교부)** 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청구서와 관련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정변경등에 의한 결정취소) ① (생략) ② (생략)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3. (생략) ③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5. (생략)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7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결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3. (생략) ③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5. (생략) 6.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등) ① (생략) 1.~3. (생략)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여성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세칙)** ....고양시성평등위원회.....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여성발전기금 지원신청서

기관(단체)명		대표(사업)자 성 명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의 목적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					
총 사 업 비	기 금 보 조 액	자 체 부 담 액	후 원 금	기 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따 로 붙 임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기관(단체)명 : (인)
대표(사업)자 :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정관(단체에 한함)
3.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단체에 한함)
4. 기타 필요한 증빙서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여성발전기금 지원신청서

기관(단체)명		대표(사업)자 성 명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의 목적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					
총 사 업 비	기 금 보 조 액	자 체 부 담 액	후 원 금	그 밖의 재원	
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따 로 붙 임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4조에 따른 상기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기관(단체)명 : (인)
대표(사업)자 :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정관(단체에 한함)
3.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단체에 한함)
4.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

현 행

1. 사업계획

가. 사업명

나. 목 적

다. 내 용

라. 소요예산 및 지원 신청액

(단위 : 천원)

내 역	소요금액	산 출 근 거	지원신청액

마.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여성발전기금		
시 지 원 금		
동 사업수익금		
자체운영자금		
회 원 모 금		
독지가후원금		
기 타		

개 정 안

1. 사업계획

가. 사업명

나. 목 적

다. 내 용

라. 소요예산 및 지원 신청액

(단위 : 천원)

내 역	소요금액	산 출 근 거	지원신청액

마.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여성발전기금		
시 지 원 금		
동 사업수익금		
자체운영자금		
회 원 모 금		
독지가후원금		
그 밖의 재원		

현 행	개 정 안
바. 정부보조금(국·도비, 시비·여성발전기금)지원실적	바. 정부보조금(국·도비, 시비·여성발전기금)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지원금액	보조금 구 분	비 고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가. 단체의 구성현황

임 원 수				회 원 (단 원) 수			
회 장	부회장	이사	기타	계	정회원	준회원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나. 활동실적

기 간	활 동 내 용	비 고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등록(허가신고) 일 자	등록(허가신고) 내 용	등록(허가신고) 번 호	등록기관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지원금액	보조금 구 분	비 고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가. 단체의 구성현황

임 원 수				회 원 (단 원) 수			
회장	부회장	이사	그 밖의 임원	계	정회원	준회원	그 밖의 회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나. 활동실적

기 간	활 동 내 용	비 고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등록(허가신고) 일 자	등록(허가신고) 내 용	등록(허가신고) 번 호	등록기관명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교부 청구서

1. 사 업 자 :						
2. 사업장소 : (전화 :)						
3. 사업기간 :						
4. 청구금액 :						
5. 청구내역 :						
총사업비	소 요 경 비 재 원					산출근거
	기 금 신청액	시지원금	자 체 부담금	후원금	기타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단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번호 : (은행)

고양시장 귀하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교부 청구서

1. 사 업 자 :						
2. 사업장소 : (전화 :)						
3. 사업기간 :						
4. 청구금액 :						
5. 청구내역 :						
총사업비	소 요 경 비 재 원					산출근거
	기 금 신청액	시지원금	자 체 부담금	후원금	그 밖의 재원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단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번호 : (은행)

고양시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2. 기금집행상황 	내 역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계				
여성 발전 기금				
시 지 원 금				
자 체 부 담 금				
기 타				| 붙 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사본, 세금계산서 각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등 각 1부. 5.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단체)명 : (인) 대표(사업)자 : (인) 전 화 번 호 :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2. 기금집행상황 | 내 역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계				
여성 발전 기금				
시 지 원 금				
자 체 부 담 금				
그 밖의 재원					 붙 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사본, 세금계산서 각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단체)명 : (인) 대표(사업)자 : (인) 전 화 번 호 : 고양시장 귀하

현 행

1.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2.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집 행 내 역	집 행 액				
	계	여성발전기 금	시지원금	자 체 부담금	기 타
계					

개 정 안

1.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2.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집 행 내 역	집 행 액				
	계	여성발전기 금	시지원금	자 체 부담금	그 밖의 재원
계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2014.4.11. 조례 제1589호) 제정에 따라 이 규칙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32조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로 변경(제1조)

나.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34조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9조로 변경(제3조)

다. “고양시여성발전위원회”를 “고양시성평등위원회”로 변경(제5조, 제12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의 용어 정비

고양시 고시 제2014-163호

도시관리계획(학교 : 중학교)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1202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8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4년 06월13일
고양시장

1)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취지

○ 식사2구역 도시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의 학생 수요에 적합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다"목(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 : 중학교)의 신규 결정

2)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202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면적 또는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 중학교)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학교 (중학교)	일산동구 식사동 1202번지 일원	-	9,528	9,528	-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 중학교) 결정 사유서

구분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비 고
신설	학교 (중학교)	**중학교 신규 결정** 면적 9,528㎡	• 고양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 계획인구에 따라 구역내 학생수요를「OECD 상위수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에 적합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구역 외 별도 부지를 마련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중학교)로 신설 결정	

4)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결정도 및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8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고시 제2014-166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395-2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8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4년 06월13일
고양시장

1)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취지

○ 덕양구 원당동 395-2번지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28호선)의 도로 선형 조정 요구 민원 해소를 위한 변경 결정

2) 위치

○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395-2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면적 또는 규모

(가) 도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최초 및 변경 결정일	결정 내용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8	25~27	보조 간선	3,262	1974.12.16 경기도고시제4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시점~종점 결정
금회	대로	3	28	25~27	보조 간선	3,262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시·종점 변경없이 법면 구간 일부 면적 제척

(나) 도로 (변경) 결정 사유서

기 정	변 경	변경내용	변경사유
104,639㎡	104,580㎡ (일부구간 면적변경)	· 시점, 종점 변경없이 원당동 395-2번지 법면 구간 59㎡ 도시계획시설(도로) 에서 제척	· 단절토지 해소 요구 민원에 따른 일부 선형 조정(제척) 변경

4)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결정도 및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8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고시 제2014-167호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고양삼송수질복원센터)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우리시 덕양구 용두동 550-1번지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고양삼송수질복원센터)사업에 대하여,
2.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의제 협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처리되었으나 사업면적 변경(사유: 좌표보정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3.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3일
고 양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50-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고양삼송수질복원센터)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 내용

구 분		시설명	면적(㎡)	위치	비고
결정	당초	하수종말처리시설	22,556.00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50-1 일원	
	변경		22,559.00		
시행	당초	하수종말처리시설	22,556.00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50-1 일원	
	변경		22,559.00		

- 건축개요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대지면적(㎡)	22,556.00	22,559.00	변경
건축면적(㎡)	1,168.83	1,168.83	변경없음
공작물면적(㎡)	-	-	〃
연면적(㎡)	4,483.31	4,483.31	〃
건폐율(%)	5.18	5.18	〃
용적율(%)	6.00	6.00	〃
규모	지하2층, 지상2층	지하2층, 지상2층	v

- 건물개요

구분	관리동(㎡)	야외 화장실(㎡)	합계(㎡)
지하2층	934.60	-	934.60
지하1층	2,195.59	-	2,195.59
지상1층	674.02	86.82	760.84
지상2층	592.28	-	592.28
합계	4,396.49	86.82	4,483.31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54-1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직할사업단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사업착수일 : 2011.8, 준공예정일: 2013. 06. 10.
- 사업착수일 : 동일, 준공예정일: 2014. 06.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공부상		편입 면적	소유자		비 고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당초	용두동	549-1	잡	2536	7.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변경	동산동	330-484			7.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	당초	용두동	550-1	잡	7236	5954.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변경	동산동	330-486			5954.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3	당초	용두동	551	잡	2635	5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변경	동산동	330-489			5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4	당초	용두동	555-2	답	3940	51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변경	동산동	330-490			51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5	당초	용두동	556-2	잡	5022	4274.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변경	동산동	330-492			4274.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6	당초	용두동	557	대	323	33.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변경	동산동	330-493			33.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7	당초	용두동	557-4	잡	4234	3988.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변경	동산동	330-497			3988.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8	당초	용두동	558-3	전	96	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변경	동산동	330-503			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9	당초	용두동	558-4	잡	238	23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변경	동산동	330-504			23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0	당초	용두동	558-5	전	3164	746.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변경	동산동	330-505			746.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1	당초	용두동	558-6	전	3540	319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변경	동산동	330-506			319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2	당초	용두동	558-9	잡	3015	2948.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변경	동산동	330-508			295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3	당초	용두동	559-2	잡	46	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변경	동산동	330-511			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4	당초	용두동	562-2	잡	2013	66.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변경	동산동	330-517			66.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5	당초	용두동	562-3	잡	5071	66.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변경	동산동	330-518			66.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6	당초	용두동	562-4	잡	1146	12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변경	동산동	330-519			128.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7	당초	용두동	928-1	천	8312	335.3		국(건설부)	
	변경	동산동	330-524			335.3		국(건설부)	
계	당초					22,556			
	변경					22,559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고양시 고시 제2014 - 169호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시 덕양구 고양동 707번지 일원에 도시정비과에서 신청한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104), 도시정비과(031-8075-316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06월 13일
고 양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구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7번지 일원	-	증)53,260.0	53,260.0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	변 경 사 유
신설	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7번지 일원	53,26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9호 내용에 의거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계	53,260.0	-	53,260.0	1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53,260.0	-	53,260.0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16	1,721	8,734.0	3	115	1,097.0	2	906	3,526.0	11	700	4,111.0
	변경	14	1,636	7,652.0	5	173	1,801.0	2	894	2,918.0	7	569	2,933.0
광로	기정	-	-	-	-	-	-	-	-	-	-	-	-
대로	기정	2	906	3,233.0	-	-	-	1	864	3,169.0	1	42	64.0
	변경	2	906	2,746.0	-	-	-	1	864	2,698.0	1	42	48.0
중로	기정	3	113	1,090.0	2	87	806.0	-	-	-	1	26	284.0
	변경	2	87	982.0	2	87	982.0	-	-	-	-	-	-
소로	기정	11	702	4,411.0	1	28	291.0	1	42	357.0	9	632	3,763.0
	변경	10	643	3,924.0	3	86	819.0	1	30	220.0	6	527	2,885.0

주) 1. 도로의 가각, 가감속차로, 버스베이 등을 면적에 포함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폭원(m)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대로	2	11	30~46	간선도로	11,160(864)	대로3-25 성사동523-5	벽제동고양시계 벽제동산38-14	일반도로	-	경기도고시 제440호 (74.12.16.)	0는 자구단위 구역내
변경	대로	2	11	30~46	간선도로	11,160(864)	대로3-25 성사동523-5	벽제동고양시계 벽제동산38-14	일반도로	-	경기도고시 제440호 (74.12.16.)	
기정	대로	3	33	25~28.5	보조간선도로	1,980(42)	대로2-11 벽제동 133-10	고양시계 벽제동 485-3	일반도로	-	경기도고시 제1999-34호 (99.02.27.)	0는 자구단위 구역내
변경	대로	3	33	25~28.5	보조간선도로	1,980(42)	대로2-11 벽제동 133-10	고양시계 벽제동 485-3	일반도로	-	경기도고시 제1999-34호 (99.02.27.)	
기정	중로	1	51	20	보조간선도로	1,010(61)	대로2-11 벽제동 196-3	대로3-33 벽제동 485-2	일반도로	-	경기도고시 제440호 (74.12.16.)	0는 자구단위 구역내
변경	중로	1	51	20	보조간선도로	1,010(61)	대로2-11 벽제동 196-3	대로3-33 벽제동 485-2	일반도로	-	경기도고시 제440호 (74.12.16.)	
기정	중로	1	69	20	집산도로	119(26)	대로2-11 벽제동 166-15	중로1-70 고양동 674	일반도로	-	고양시고시 제17호 (96.05.13.)	0는 자구단위 구역내
기정	중로	3	185	12	집산도로	26	대로2-11 고양동607	소로덕1-216 고양동607	일반도로	-	고양시고시제17호 (99.03.13.)	
변경	소로	1	216	10	국지도로	124(26)	중로1-70 고양동644	소로덕1-216 고양동607	일반도로	-	고양시고시제17호 (99.03.13.)	0는 자구단위 구역내
기정	소로	덕1	217	10	국지도로	28	대로2-11 고양동541	소로덕3-504 고양동541	일반도로	-	고양시고시제17호 (99.03.13.)	
신설	소로	덕1	218	10	국지도로	32	대로2-11 고양동 621	소로3-593 고양동 62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덕2	560	8	국지도로	42	소로덕2-542 고양동444-21	소로덕3-497 고양동529	일반도로	-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변경	소로	덕2	560	8	국지도로	30	수변공원1 고양동444-21	소로덕3-497 고양동529	보행자전용도로	-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폐지	소로	덕3	497	6	국지도로	101	소로덕2-560 고양동529	소로덕1-217 고양동541	일반도로	-	고양시고제17호 (99.03.13.)	

구분	규모			폭원(m)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소로	덕3	501	6	특수도로	30	중로1-51 고양동525	소로덕2-560 고양동529	보행자전용도로	-	고양시고제17호 (99.03.13.)	
변경	소로	덕3	501	6	특수도로	31	중로1-51 고양동525	소로덕2-560 고양동529	보행자전용도로	-	고양시고제17호 (99.03.13.)	
기정	소로	덕3	504	6	국지도로	145 (24)	소로덕2-560 고양동514	소로덕1-217 고양동545	일반도로	-	고양시고제17호 (99.03.13.)	()는 지구단위 구역내
변경	소로	덕3	504	6	국지도로	145 (30)	수변공원1 고양동514	소로덕1-217 고양동545	일반도로	-	고양시고제17호 (99.03.13.)	()는 지구단위 구역내
기정	소로	덕3	588	6	국지도로	168	중로1-70 고양동698	중로3-171 고양동739	일반도로	-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변경	소로	덕3	588	6	국지도로	166	중로1-70 고양동698	중로3-171 고양동739	일반도로	-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기정	소로	덕3	589	6	국지도로	37	소로덕3-588 고양동711	소로덕3-590 고양동711	일반도로	-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변경	소로	덕3	589	6	국지도로	36	소로덕3-588 고양동711	소로덕3-590 고양동711	일반도로	-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기정	소로	덕3	590	6	국지도로	88	소로3-588 고양동711	소로덕3-591 고양동701	일반도로	-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변경	소로	덕3	590	6	국지도로	101	소로3-588 고양동711	중로3-171 고양동701	일반도로	-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폐지	소로	덕3	591	6	특수도로	12	중로3-171 고양동728	소로덕3-590 고양동711	보행자전용도로	-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폐지	소로	덕3	592	6	특수도로	9	소로덕3-593 고양동629	목암천 고양동629	보행자전용도로	-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기정	소로	덕3	593	6	국지도로	163	대로2-11 고양동621	대로3-33 벽제동676	일반도로	-	고양시고시제17호 (99.03.13.)	
변경	소로	덕3	593	6	국지도로	187	소로1-218 고양동629	소로1-218 벽제동629	일반도로	-	고양시고시제17호 (99.03.13.)	
신설	소로	덕1	218	10	국지도로	32	대로2-11 고양동 621	소로3-593 고양동 629	일반도로	-		

□ 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2-11	대로2-11	· 도로선형 변경 - 연장 : 11,160m(864m)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대로3-33	대로3-33	· 도로선형 변경 - 연장 : 1,980m(42m)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로1-51	중로1-51	· 도로선형 변경 - 연장 : 1,010m(61m)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로3-185	소로1-216	· 도로선형 및 폭원변경 - 연장 : 124m(26m) - 폭원 : 12m→10m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1-218	·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32m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2-560	소로2-560	· 도로 사용형태 변경 - 일반도로→보행자도로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588	소로3-588	· 도로연장 변경 - 연장 : 168m→166m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589	소로3-589	· 도로연장 변경 - 연장 : 37m→36m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590	소로3-590	· 도로연장 변경 - 연장 : 88m→101m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591	-	도로 폐지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592	-	도로 폐지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593	소로3-593	· 도로연장 변경 - 연장 : 163m→187m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497	-	도로 폐지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501	소로3-501	· 도로연장 변경 - 연장 : 30m→31m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504	소로3-504	· 도로연장 변경 - 연장 : 145m(24m)→145m(30m)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소	1,000	-	1,000		
변경	74	노외 주차장	고양동 701번지 일원	1,000	-	1,000	고양시고시 제2001-31호 (01.04.09.)	선형 변경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74	주차장	· 선형변경 - 면적 1,000㎡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개소	5,943.9 (3,592)	증420	6,363.9 (4,010)		
기정	160	벽제2	어린이공원	고양동 729번지 일원	2,460.9 (107)	-	2,460.9 (107)	고양시고시 제2001-31호 (01.04.09.)	
변경	335	공원	소공원	고양동 702번지 일원	617.0	감153	464.0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기정	336	공원	소공원	고양동 614번지 일원	336.0	-	336.0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기정	337	공원	소공원	고양동 557번지 일원	606.0	-	606.0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변경	1	공원	수변공원	고양동 1-5번지 일원	1,924.0	증573	2,497.0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중복결정 면적중 1,109㎡하천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35	소공원	· 면적변경 - 617㎡→464㎡(감 153㎡)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1	수변공원	· 면적변경 - 1,924㎡→2,497㎡(증 573㎡)	벽제천과 연계하여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소공원을 수변공원으로 계획 변경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개소		1,056	증143	1,199		
변경	318	녹지	경관녹지	고양동 461번지 일원	439	증78	517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변경	319	녹지	경관녹지	고양동 445-1번지 일원	173	증6	179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변경	320	녹지	경관녹지	고양동 762번지 일원	111	감1	110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변경	321	녹지	경관녹지	고양동 692번지 일원	333	감5	328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신규	322	녹지	경관녹지	고양동 625번지 일원	-	증 65	6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18	경관녹지	· 면적변경 - 439㎡→517㎡(증 78㎡)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319	경관녹지	· 면적변경 - 173㎡→179㎡(증 6㎡)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320	경관녹지	· 면적변경 - 111㎡→110㎡(감 1㎡)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321	경관녹지	· 면적변경 - 333㎡→328㎡(감 5㎡)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322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65㎡(증 65㎡)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3)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개소	593 (21)	-	593 (21)		()는 지구단위 구역내
기정	28	공공공지	대로3-33호선 및 목암천변	593 (21)	-	593 (21)	고양시고시 제31호 (01.04.09.)	()는 지구단위 구역내

다. 방재시설

1) 하천

□ 하천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주요 경과지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합계				2개소			15.965	-	-		
기정	15	벽제천	지방하천	벽제동 610-10	대자동 337-2	벽제동	7.54 (0.34)	10~70	321,120 (14,256)	경기도고시 제5092호 (06.06.14.)	()는 조성사업 지구내
변경	15	벽제천	지방하천	벽제동 610-10	대자동 337-2	벽제동	7.54 (0.34)	10~70	321,120 (14,119)	경고제5092호 (06.06.14.)	()는 조성사업 지구내
기정	28	목암천	소하천	벽제동 684-9	고양동 518	-	0.885	20	18,246	고양시고시 제237호 (09.09.10.)	
변경	28	목암천	소하천	벽제동 684-9	고양동 518	-	0.885	20	18,966	고양시고시 제237호 (09.09.10.)	

주) 1. 벽제천에 도로 1,322㎡, 공원 1,109㎡ 중복 결정, 공동주택용지 169㎡ 저촉
2. 목암천에 도로 819㎡, 보행자도로 235㎡ 중복 결정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5	벽제천	· 면적변경 - 14,256㎡→14,119㎡(감 134㎡)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322	목암천	· 면적변경 - 18,246㎡→18,966㎡(증 700㎡)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3 가구·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4,444.0	-	-	4,444.0	-
B1-1	1,928.0	1	고양동 745번지 일원	295.0	
		2	고양동 745번지 일원	295.0	
		3	고양동 745번지 일원	296.0	
		4	고양동 745번지 일원	296.0	
		5	고양동 712번지 일원	296.0	
		6	고양동 712번지 일원	450.0	
B1-2	2,516.0	1	고양동 711번지 일원	319.0	
		2	고양동 707번지 일원	320.0	
		3	고양동 701번지 일원	320.0	
		4	고양동 701번지 일원	280.0	
		5	고양동 701번지 일원	320.0	
		6	고양동 701번지 일원	319.0	
		7	고양동 707번지 일원	319.0	
		8	고양동 711번지 일원	319.0	

※ 1. 획지계획은 환지계획시 변경될 수 있음
2. 1필지당 1주택 건축 가능
3. 분할·합병 불가

나. 공동주택용지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합계	1,290.0	-	
A1-1	1,290.0	고양동 513번지 일원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33,061.2 (30,714.0)	-	-	33,061.2 (30,714.0)	( )는 지구단위구역내
C1-1	3,378.0	1	고양동 788번지 일원	958.0	
		2	고양동 789번지 일원	483.0	
		3	고양동 457번지 일원	474.0	
		4	고양동 457번지 일원	475.0	
		5	고양동 460번지 일원	279.0	
		6	고양동 461번지 일원	709.0	
C1-2	887.0	1	고양동 445-1번지 일원	304.0	
		2	고양동 445-1번지 일원	283.0	
		3	고양동 445번지 일원	300.0	
C1-3	856.0	1	고양동 711번지 일원	285.0	
		2	고양동 711번지 일원	285.0	
		3	고양동 711번지 일원	286.0	
C1-4	2,494.0	1	고양동 710번지 일원	499.0	
		2	고양동 710번지 일원	499.0	
		3	고양동 710번지 일원	499.0	
		4	고양동 700번지 일원	499.0	
		5	고양동 700번지 일원	498.0	
C1-5	2,096.2 (460)	1	고양동 681번지 일원	2,096.2 (460)	( )는 지구단위구역내
C1-6	1,038.0 (327)	1	고양동 673번지 일원	1,038.0 (327)	( )는 지구단위구역내
C1-7	4,172.0	1	고양동 633번지 일원	3,080.0	
		2	고양동 621번지 일원	641.0	
		3	고양동 621번지 일원	451.0	
C1-8	1,756.0	1	고양동 625번지 일원	585.0	
		2	고양동 625번지 일원	585.0	
		3	고양동 625번지 일원	586.0	
C1-9	1,646.0	1	고양동 629번지 일원	530.0	
		2	고양동 618번지 일원	530.0	
		3	고양동 618번지 일원	586.0	
C1-10	1,493.0	1	고양동 611번지 일원	350.0	
		2	고양동 608번지 일원	1,143.0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C1-11	6,029.0	1	고양동 599번지 일원	306.0	
		2	고양동 599번지 일원	352.0	
		3	고양동 599번지 일원	1,034.0	
		4	고양동 595번지 일원	419.0	
		5	고양동 595번지 일원	523.0	
		6	고양동 591번지 일원	568.0	
		7	고양동 591번지 일원	1,601.0	
		8	고양동 591번지 일원	753.0	
		9	고양동 584번지 일원	473.0	
C1-12	1,751.0	1	고양동 574번지 일원	490.0	
		2	고양동 574번지 일원	296.0	
		3	고양동 568번지 일원	697.0	
		4	고양동 562번지 일원	268.0	
C1-13	643.0	1	고양동 547번지 일원	643.0	
C1-14	4,822.0	1	고양동 541번지 일원	1,053.0	
		2	고양동 541번지 일원	908.0	
		3	고양동 541번지 일원	1,950.0	
		4	고양동 527번지 일원	911.0	

※ 1. 획지계획은 환지계획시 변경될 수 있음
2. 1필당 1주택 건축 가능
3. 분할·합병은 불가(단, C1-5는 토지형상을 고려하여 합병 허용)

라. 주차장용지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1,000.0	-	-	1,000.0	
D1	1,000.0	-	고양동 701번지 일원	1,000.0	

※ 분할·합병 불가

마. 종교용지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2,649.0	-	-	2,649.0	
F	2,649.0	-	고양동 671번지 일원	2,649.0	

※ 분할·합병 불가

2.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B1-1 ~ B1-2	도면번호와 동일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건축법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게임제공업의 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과 복합으로 설치되는 시설), 장의사, 고시원, 노래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지하층 주거(주택)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이		• 4층 이하(단,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		•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 차이 15cm 이하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 경사지붕 70% 이상 확보 • 에어컨 실외기 설치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함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 중로변 1m
		기타사항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40%미만, 1층 이하에 한함. • 차량의 진 ·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차량 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폭 6m)만 허용(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할 경우 예외)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1	도면번호와 동일	용도	허용용도	•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및 제2조8호의 부대시설, 제2조9호의 복리시설 1. 단지형 연립주택 2, 단지형 다세대주택 3. 원룸형 주택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30%이하
		높이		• 5층 이하(단,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		• 에어컨 실외기 설치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함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C1-1 ~ C1-14	도면번호와 동일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게임제공업의 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과 복합으로 설치되는 시설), 장의사, 고시원 제외)
				• 건축법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른용도(근린생활시설)와 복합한 것에 한해서 최상층에 1개층만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이		• C1-1 ~ C1-6 : 5층 이하(단,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 C1-7 ~ C1-14 : 6층 이하(단,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		•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 차이 15cm 이하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 에어컨 실외기 설치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함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 중로·대로변 1m

라.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D1	도면번호와 동일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가목의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6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한계선		-

마. 종교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F1	도면번호와 동일	용도	허용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의 종교집회장,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가목의 아동관련시설중 종교집회장과 복합한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한계선		-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5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결정도 및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104), 도시정비과(031-8075-3163)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공고 제2014 - 886 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고양시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신조 공인 등록 및 폐기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6. 13

고 양 시 장

1. 등록 및 폐기 사유 : 기타(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
2. 최초사용일 및 폐기일 : 2014. 6. 16.
3. 등록 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인명	규격(cm)	인 영
고양시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1.8×1.8	

4. 폐기 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인명	규격(cm)	인 영
고양시 관서운영경비 출납원인	1.8×1.8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14 - 256 호

공 고

고양시 공인조례 제10조(공인의 폐기)에 의하여 폐기 등록한 공인을 동 조례 제12조(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인의 명칭	폐기인영
(민원실) 고양시덕양구청장인(전용)	

2. 공인 폐기 사유 : 하나로증명발급창구 운영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팀 인증기 불용처리
3. 폐기 연월일 : 2014. 6. 30.
4. 공고기관 : 고양시 덕양구청

2014. 6. 13.

고양시 덕양구청장